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최민희의원 · 이상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30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이상회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u>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우수대학생 선발·지원,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등 이공계 대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이공계 대학 및 인재양성 지원이 부처별 개별 사업·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우수 역량을 갖춘 대학의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 참여 및 대학 간 연계·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컨대,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제도를 운용¹⁾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²⁾에 출연금 사업 중심으로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공계 주요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 과학기술 특성화 사립대학은 정책 대상 선정·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이에 개정안은 포항공대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인력양성 지원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 제11조³⁾에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는 ‘연구중심대학’의 선정·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련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새로운 대학 유형(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 ‘연구중심대학’과 개정안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모두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 구조가 유사하여 차별성이 모호할 수 있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연구중심대학’ 관련 사업도 별도로 관리·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 지원하는 두 유형의 대학 간 역할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과 지원방식·추진체계에 관한 구체적 운영방향을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지원 범위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정할 경우 정부 지원이 운영비 보전 중심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의 수정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학생 정원, 교원 제도,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학사 운영 등은 교육부장관 소관이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9